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br>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 3 |



## I. 개요

###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4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현 행                            | 서영교의원안                                                                                                                                                                                                                                                                                       | 안도걸의원안                                                                                                                                                                                                                                                                                | 정부안·정태호의원안                                                                                                                                                                                                                                                                                                 |
|--------------------------------|----------------------------------------------------------------------------------------------------------------------------------------------------------------------------------------------------------------------------------------------------------------------------------------------|---------------------------------------------------------------------------------------------------------------------------------------------------------------------------------------------------------------------------------------------------------------------------------------|------------------------------------------------------------------------------------------------------------------------------------------------------------------------------------------------------------------------------------------------------------------------------------------------------------|
| <input type="checkbox"/> <신 설> | <input type="checkbox"/> <u>특별세액공제에 체육 시설 이용료 추가</u><br><br>(「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br>○ 대상자: <u>근로소득</u> 이 있는 거주자<br><br>○ 공제대상: <u>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체육 시설에 지급한 이용료</u><br><br>○ 공제형태: <u>세액공제</u><br>○ 공제율: <u>15%</u><br>○ 공제한도: <u>연 30만원 (200만원*0.15)</u><br><br>○ 적용기한: <u>없음</u> | <input type="checkbox"/> <u>특별세액공제에 체육 시설 이용료 추가</u><br><br>(「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br>○ 대상자: <u>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u> 이 있는 거주자<br><br>○ 공제대상: <u>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u><br><br>○ 공제형태: <u>세액공제</u><br>○ 공제율: <u>15%</u><br>○ 공제한도: <u>연 30만원 (200만원*0.15)</u><br><br>○ 적용기한: <u>없음</u> | <input type="checkbox"/> <u>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u><br><br>(「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br>○ 대상자: <u>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u><br><br>○ 공제대상: <u>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u><br><br>○ 공제형태: <u>소득공제</u><br>○ 공제율: <u>30%</u><br>○ 공제한도: <u>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과 합산하여 300만원</u><br><br>○ 적용기한: <u>2025. 12. 31.</u> |

\* 서영교의원안 2024. 6. 10. 제출(의안번호 251), 안도걸의원안 2024. 6. 25. 제출(의안번호 894),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sup>1)</sup>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연 최대 2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영교의원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공제 대상 및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고, 안도걸의원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체육시설(골프장 제외)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대상 및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sup>2)</sup> 항목에 추가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

1)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구 분   | 체육시설종류                                                                                                                                                                                                                                                                                                                                     |
|-------|--------------------------------------------------------------------------------------------------------------------------------------------------------------------------------------------------------------------------------------------------------------------------------------------------------------------------------------------|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임.

-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됨.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가 정신적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7.0%, 신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86.1%에 달하는 등 체육활동의 증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지출비용 여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에 달하고 있어 체육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공제율                                                         |              | 공제한도           |                |        |
|---------------------------------------------------------------|--------------|----------------|----------------|--------|
| 구분                                                            | 공제율          | 구분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초과 |
| ① 신용카드                                                        | 15%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 30%          |                |                |        |
| ③ 전통시장<br>※ 2023년 4.1 ~ 12.31. 사용분                            | 40%<br>(50%) | 추가<br>공제<br>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 ④ 대중교통<br>※ 2023년 1.1 ~ 12.31. 사용분                            | 40%<br>(80%) |                |                |        |
| ⑤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br>※ 2023년 4.1 ~ 12.31. 사용분         | 30%<br>(40%) |                |                |        |
| ⑥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br>금액 증가분<br>※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하여 적용 | 10%          |                | 23년대비<br>소비증가분 | 100만원  |

첫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비용을 낮추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체육활동 참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체육시설 이용비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57.5%)’,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46.8%)’,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35.0%)’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20.0%)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따라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체육활동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체육활동 관련 비용 절감 효과만 있을 뿐 추가적인 체육활동 증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둘째, 세제 지원 외에 장려금 지급 등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면세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세제혜택을 적용할 경우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3.6%에 달하는 면세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됨.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가 소득 수준과 전반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득별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

(단위: %, 원)

| 경비<br>월 소득      | 없음   | ~3만원 | 3만원<br>~10만원 | 10만원<br>~20만원 | 20만원<br>~30만원 | 30만원~ | 평균(원)   |
|-----------------|------|------|--------------|---------------|---------------|-------|---------|
| ~100만원          | 74.9 | 15.5 | 7.4          | 0.6           | 0.7           | 0.9   | 9,971   |
| 100만원<br>~200만원 | 71.3 | 13.4 | 12.2         | 2.4           | 0.5           | 0.3   | 12,263  |
| 200만원<br>~300만원 | 62.2 | 11.0 | 17.1         | 7.2           | 1.4           | 1.2   | 25,410  |
| 300만원<br>~400만원 | 50.8 | 11.9 | 20.5         | 13.1          | 2.2           | 1.6   | 38,382  |
| 400만원<br>~500만원 | 44.4 | 13.6 | 22.1         | 14.1          | 4.1           | 1.8   | 46,435  |
| 500만원<br>~600만원 | 48.0 | 10.2 | 20.7         | 16.0          | 3.1           | 2.2   | 47,111  |
| 600만원<br>~700만원 | 44.5 | 8.6  | 17.8         | 15.7          | 9.2           | 4.1   | 64,348  |
| 700만원<br>~800만원 | 37.6 | 9.1  | 21.8         | 17.1          | 8.2           | 6.3   | 79,603  |
| 800만원<br>~900만원 | 40.8 | 6.1  | 15.7         | 18.1          | 7.0           | 12.2  | 103,168 |
| 900만원~          | 29.9 | 12.3 | 12.2         | 20.7          | 7.1           | 17.8  | 170,12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2023 재구성

셋째,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를 고려한 공제한도 설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48,788원(연평균 약 58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 200만원 이상 체육활동 경비를 지출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고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넷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 및 공제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서영교의원안은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안도걸의원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각각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시 납세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접 신고·증명해야 하므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소비여력이 없어 체육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저소득

층으로 정책대상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제방식 및 대상의 설정은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의 특성 및 입법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54 |